

製品生産과 管理上の 諸問題

— 各種制約條項設定과 秘密維持 —

一承 前一

㉔ 品質管理限界

技術提供者에 따라 實施權者가 製造한 製品의 品質性能이 實施許諾者의 製品과 同等以上을 要求하되 그렇지 못한 製品은 販賣를 못하도록 現實的制約을 提議하는 수가 있다.

이같은 規定은 實施許諾者의 商標를 使用하는 경우에는 信用維持上的 觀點에서 不得已하나 이 경우라 할지라도 品質規格이 合致하지 않는 製品에도 實施許諾者의 商標를 附着하여 販賣하도록 推進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品質의 製品을 製造하느냐 하는 것은 實施權者 自身이 價格이나 販路를 考慮하여 決定할 問題이므로 實施許諾者의 商標를 使用하지 않게되어있음에도 어떠한 要求가 있을때 즉 高水準의 品質保障을 要求하거나 이에 合致하지 않느냐 하여 製品의 販賣禁止나 契約의 解約을 規制하는 條項要求등은 不當한 制約이 되므로 그 規定要求는 拒絕해야 한다.

㉕ 不可抗力契約條項

契約當事者가 전혀 自己責任以外的 事態로 契約條件을 不履行하거나 條件履行을 遲延하는 경우 즉 火災, 地震, 暴風雨, 戰爭, 反亂, 罷業등이 發生하였을 경우에는 不可抗力의 事態이므로 條件責任을 免責해야 한다는 規定을 미리 契約上에 밝혀두어야 한다.

이같은 不可抗力事由는 契約에 따라 一律的이 아니므로 豫想되는 事態를 考慮하여 契約時에 미리 規定해 두어야 한다.

㉖ 類似品の 製造禁止條項

實施許諾者는 實施權者에게 契約期間中 契約製品과 類似하거나 競合製品의 製造를 못하게 하고 또 이같은 製品을 製造하려 할 때에는 同意를 미리 얻게끔 契約上에 規定을 要求하는 수가 있다. 또 契約에 따라서는

契約對象技術과 競合하는 技術에 대하여 實施權者가 스스로 研究開發하거나 第3者와 技術提携를 못하도록 制限하기도 한다.

이같은 要求는 實施權者가 契約製品과 類似 또는 競合되는 製品을 製造販賣함으로써 實施許諾者가 契約製品에 관한 技術을 提供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期待한 實施料收入을 見낼수 없게됨을 防止하려는데에 그 目的을 두는 것이다.

獨占的實施契約의 경우에는 實施許諾者로서도 다른 第3者에게 實施權을 提供할 수 없게되어 있으므로 이를 豫想하고 實施權者에게 이같은 制約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반드시 不當하다고 할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契約條項은 獨占契約의 경우가 殆半이며 非獨占契約의 경우에는 이 條項이 實施權者를 不當하게 拘束하는 要素가 된다.

특히 實施權者가 그 技術導入以前에 契約製品과 類似하거나 競合되는 製品을 製造하면서 저지않은 市場을 確保하고 있을 때에는 契約締結後에 從來의 製品製造를 一切 認定하지 않게되면 實施權者의 經營에도 障害가 될뿐아니라 從來의 顧客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도 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는 製造禁止規定自體를 拒否하지 못하는 대신에 最少限 從來부터 製造하던 製品만이라도 製造禁止條項의 適用에서 除外하거나 製造中止의 경우라도 一定妥當한 猶豫期間을 設定토록 해야한다.

또 契約期間中에 다른 優秀한 技術의 出現으로서 契約對象技術이 落後되거나 自己가 이미 研究에 着手하여 開發의 可能性이 있을 경우에도 이같은 拘束條項은 實施權者에게 不利하게 된다.

技術導入認許機關에서도 類似하거나 競合製品의 製造禁止規定은 原則적으로 不許하는 경우가 있음을 豫見해야 한다.

⑳ 期間滿了와 製造禁止條項

契約期間滿了後에도 製造禁止하는 條項을 契約에의 挿入을 要求하는 수가 있다. 즉 契約期間終了後에 實施權者는 實施許諾者가 提供하던 노우하우를 使用해서는 안되며 또 이에 관한 資料를 返還해야 한다든가 契約終了後에는 契約製品과 競合關係에 있는 어떠한 製品도 製造해서는 안된다. 또는 製造하려 할때에는 미리 實施許諾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등의 條項을 設定하려 한다.

다시말해서 契約製品의 製造禁止, 契約製品과 類似品 또는 競合品까지를 包含해서 禁止하려는 경우도 있다.

國家에 따라서는 노우하우를 法律的 權利로 認定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歐美쪽에서는 노우하우를 特許權과 同等하게 法律上權利로 認定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체로 契約期間中에 限하여 一定範圍內에서 그 使用을 認定하되 契約期間終了後에는 特別한 合意가 없으면 이를 認定하지 않는 경우가 常例이다.

어쨌든 契約終了後의 製造禁止條項은 實施權者에게는 극히 不利한 拘束條項이므로 實施權者는 이를 極力 避해야 하나 製造禁止條項이 있어도 노우하우가 公知의 것일 경우에는 노우하우自體가 價値를 喪失하게 되므로 不合理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制限條項은 當然히 効力이 喪失된다고 解釋해야 한다.

또한 契約製品과 類似品 또는 競合品까지를 包含한 製造禁止條項은 契約期間中의 製造禁止일때는 獨占契約이되므로 從來의 製品을 除外한다는 등의 規定이 있으면 모르되 契約期間終了後에 대해서는 이같은 制約은 正當한 制限理由가 될수는 없다.

實施權者로서는 이같은 制約이 있으면 技術을 習得하고서도 契約終了後에는 使用할수 없는 不利益을 招來하게 되므로 이 規定은 實施權者의 歸責原因에 따른 契約終了의 경우나 實施許諾者의 工業所有權에 抵觸하는 範圍內에서 禁止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㉑ 秘密維持責任

노우하우는 秘密을 維持함으로써 비로서 그 財産的 價値가 保護되므로 노우하우 契約에는 대개 實施權者가 秘密維持를 約束하는 條項을 設定하게 된다. 그리

나 이같은 條項이 없어도 노우하우의 性質上 또는 信義上 實施權者는 宜當秘密을 保持해야 한다.

다만, 秘密維持를 위한 技術情報範圍는 實施許諾者가 開示한 모든 技術情報에 미치는 것이 아니며 契約上 規定된 範圍에 限定하는 경우도 있다.

實施權者가 秘密維持의 管理責任負責範圍는 許諾製品의 製造販賣에 直接關係되는 從業員뿐 아니라 下請業者에게도 미칠수 있으며 이 義務에 違反한 경우에는 實施權은 義務不履行責任이 追求되기도 한다. 또 노우하우의 開示를 받은 從業員이 他企業에 轉職할 경우의 秘密漏泄防止는 契約속에서 미리 規定해야 한다.

노우하우 契約滿了後의 秘密維持에 대해서는 提供받은 노우하우가 契約期間終了와 同時에 그 價値가 喪失되는 것이 아니므로 契約期間滿了後에도 2~3年 정도는 實施權者에게 秘密維持義務를 지우는 事例가 許多하다.

이같은 경우의 實施權者는 宜當 그 義務에 順從해야 하나 秘密維持의 期日에 대해서 明示規定이 없고 또 永久한 秘密維持를 要求하게 될때에는 그 노우하우가 이미 公知의 事實이 된 후일지라도 實施權者만이 秘密維持義務를 負責하는 拘束結果가 되므로 이때에는 公知가된 範圍에서 解除한다는 但書條項을 미리 挿入해야 한다.

㉒ 原資材와 部品の 購入義務

導入하는 技術에 關聯되는 製品에 關하여 必要한 原資材 또는 部品등을 實施許諾者나 그 指定特定人으로부터 購入해야 한다고 規定할 때가 있다. 또 實施權者가 契約製品의 生産에 必要한 原資材, 部品, 機械器具 등을 實施許諾者로부터 購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契約實施當初에는 實施權者가 技術의 未熟으로 良質의 原資材나 部品の 安定的 供給源確保가 不可避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않다.

또 商標의 使用許諾이 同時에 契約되었을 경우 製品의 品質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實施許諾者나 그 指定人으로부터 原資材와 部品등의 供給을 받아야 할때도 있다.

그러나 實施權者가 스스로 良質의 原資材나 部品등을 有利하게 購入할수 있을 경우에 自由를 制限當하는 條項은 第3者에게 競爭上 不利하게 되므로 이 問題를 規定할 경우에는 『實施權者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實施許諾者는 妥當한 價格으로 이를 供給한다.』 정도의 規定을 設定하도록 努力해야 한다.